

#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63호
----------	------

제 출 일 자 2004. 11. 29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이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55세이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
- 나. 인용 법령조항 및 용어 정비
  - 방범원 ⇒ 지도원
  - 경찰서·지서 및 파출소 ⇒ 경찰관서
  - 지방공무원법 제68조제1항 ⇒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  - 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제목중 “방범원” 을 “지도원” 으로 하고, 같은조 본문중 “방범원을 경찰서·지서 및 파출소” 를 “지도원을 경찰관서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법 제68조제1항” 을 “법 제6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중 직명란 “방범원” 을 “지도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의2(방법원의 파견)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 중 <u>방법원을 경찰서·지서 및 파출소에 파견근무</u>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2(<u>지도원</u>-----) ----- -----<u>지도원을</u> <u>경찰관서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근무상한연령)①~② (생략) ③ <u>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 이하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당해 고용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, 당해 고용직담당 직무의 특수성, 직무수행 능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</u>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5조(-----) ① ~②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</p>
<p>제10조(징계)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<u>법 제68조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</u> 행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10조(-----) ① ----- - <u>법 제69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<개 정 전>

### <별 표>

####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

구 분	1 종	경 노 무
직 명	<u>방 범 원</u>	사 환
근무상한연령	57세	57세

## <개 정 후>

### <별 표>

####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

구 분	1 종	경 노 무
직 명	<u>지 도 원</u>	사 환
근무상한연령	57세	57세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I 지방공무원법

제66조(정년)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1998.9.19>

1.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

5급이상 공무원 - 60세

6급이하 공무원 - 57세

2.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

연구관 및 지도관 - 60세

연구사 및 지도사 - 57세

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- 57세 내지 60세

3. 기능직공무원

방호직렬공무원 - 59세

기타 직렬공무원 - 50세 내지 57세

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86.12.31>

③ 삭제 <1986.12.31>

④ 삭제 <1998.9.19>

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. <신설 1978.12.6, 1998.9.19>

## II 지방공무원임용령

제41조의3(기능직공무원의 정년)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능직 공무원중 방호직렬 공무원 : 59세

2. 제1호외의 기능직공무원 : 57세

### Ⅲ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(표준안) - 행정자치부

제5조(근무상한연령)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.

② 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된다.(전문개정 83.1.6)

③ 삭 제 <86.12.31>

<별표>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

구 분	1 종	경 노 무
직 명	지도원	사 환
근무상한연령	57세	57세